

가스관계법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본 내용은 92년 4월 15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법 내용을 요약한 것임.

동력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가스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련된 시설 및 기술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92. 4.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 공포하였다.

개정된 이들 법령에 대해 그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1) 가스공급자가 가스수요자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던 것을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함. (제11조 제1항)
- 2) 음식점, 다방 등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kg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총괄자에 대해서는 년1회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가스사용이 보편화되어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당해 교육을 면제함. (별표 19)
- 3) 음식점, 다방 등을 경영하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영업장의 면적을 종전에는 40㎡ 이상으로 하던 것을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함.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 4) 제38조 제1항 제2호(학교, 유치원, 시설강습소, 병원, 의원, 시장, 호텔, 여관 등과 기타 사람을 수용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 또는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스사용시설로서 모든 연소기가 배관(경질관에 한함)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마다 휴즈콕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 장치를 면제하던 것을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가스사용시설을 포함한 모든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가 배관(경질관에 한함)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마다 휴즈콕크 또는 상자콕크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

며 각 연소기마다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 등의 설치를 면제함.(별표 14. (9))

5) 가스레인지, 가스난로 등 소형연소기(가스소비량이 14,400kcal/h 이하인 연소기에 한함)가 염화비닐호스로 연결된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에는 가스누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유량에 적합한 휴즈콕크, 상자콕크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별표 14.(18)-(2)신설)

*부칙: 별표 14(18)-(2)의 규정은 93. 1. 1부터 시행하며 93. 1. 1 이전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1) 도시가스 월사용량이 1,000㎡ 이상 4,000㎡ 이하인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총괄자에 대하여는 년1회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면제함. (별표 11)
 - 2) 7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압력조정기의 제조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그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이 중압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별표 3 제8호, 가목(29))
 - 3) 특정가스사용시설(월 사용예정량이 1,0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등)에는 가스누설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소기가 배관(경질관에 한함)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마다 휴즈콕크, 상자콕크 등의 안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면제함. (별표 4 제1호, (15))
 - 4) 가스사용시설중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의 배관에 중간밸브 등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배관 또는 호스와 연소기 사이에 중간밸브를 설치하고, 연소기를 설치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밸브를 설치토록 함. (별표. 제1호, (16). 제2호, (13))
 - 5) 특정가스 사용시설외에 가스사용시설에는 배관과 각 연소기 사이에 휴즈콕크를 설치한 경우에 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 등의 설치를 면제하던 것을 휴즈콕크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함. (별표 4. 제2호, (12))
 - 6) 가스레인지, 가스난로 등 소형연소기(가스소비량이 14,400kcal/h 이하인 연소기)가 염화비닐호스로 연결되어 있는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에는 가스누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즈콕크, 상자콕크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함. (별표 4. 제2호, (13)-2 신설)
- *부칙: 「별표 4」 제2호(13)-2의 개정규정은 93. 1. 1부터 시행, 93. 1. 1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㉞)